

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(2024. 6. 11.)

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검토경과 | 1 |
| II. 제출근거 | 1 |
| III. 세입·세출예산 결산 총괄 | 1 |
| 1. 결산총괄 | 1 |
| 2. 세입결산 | 2 |
| 3. 세출결산 | 2 |
| 4. 세출·세입처리상황 | 2 |
| 5. 일반회계 세입결산 | 3 |
| 6. 일반회계 세출결산 | 3 |
| 7.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 | 5 |
| 8.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사용 현황 | 6 |
| 9. 계속비 결산 | 9 |
| 10. 예비비 지출 | 11 |
| 11. 다음연도 이월사업 | 13 |
| IV. 기금결산 | 14 |
| V. 채권액결산 | 16 |
| VI. 채무액결산 | 17 |
| VII. 보조금결산 | 17 |
| VIII. 기타의견 | 18 |

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
I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 30.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회부일자 : 2024. 5. 31.
- 의안번호 :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(제55호)
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(제56호)

II 제출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0조
-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-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

III 세입 · 세출예산 결산 총괄

1. 결산총괄(결산서 p25)

(단위 : 백만원)

| 회계별 | 예산현액 | 세입결산 | 세출결산 | 잉여금 (이월액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 계 | 983,778 | 990,665 | 772,309 | 218,356 |
| 일반회계 | 892,990 | 897,793 | 699,782 | 198,011 |
| 특별회계 | 90,788 | 92,872 | 72,527 | 20,345 |

2. 세입결산(결산서 p31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징수결정액 (B) | 실제수납액 (C) | 정리보류액 | 미수납액 | 비율(%)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| | | | C/A | C/B |
| 계 | 983,778 | 996,395 | 990,665 | 674 | 5,056 | 100.7 | 99.4 |
| 일반회계 | 892,990 | 902,891 | 897,793 | 674 | 4,424 | 100.5 | 99.4 |
| 특별회계 | 90,788 | 93,504 | 92,872 | 0 | 632 | 102.3 | 99.3 |

3. 세출결산(결산서 p35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(A) | 예산성립후 증감액 (B) | 예산현액 (C)=A+B | 지출액 (D) | 다음연도 이월액 (E) | 보조금 반납액 (F) | 집행잔액 G=C-D-E-F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 | 816,505 | 167,273 | 983,778 | 772,309 | 170,978 | 4,694 | 35,797 |
| 일반회계 | 741,584 | 151,406 | 892,990 | 699,782 | 159,094 | 4,643 | 29,471 |
| 특별회계 | 74,921 | 15,867 | 90,788 | 72,527 | 11,884 | 51 | 6,326 |

4. 세입·세출 처리상황(결산서 p38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세입 결산액 (A) | 세출 결산액 (B) | 결산상 잉여금 (A-B) 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| 명시 이월 | 사고 이월 | 계속비 이월 | 보조금 반납금 | 교부 차액 | 순세계 잉여금 |
| 계 | 990,665 | 772,309 | 218,356 | 73,943 | 55,809 | 40,749 | 4,694 | 3,037 | 40,124 |
| 일반회계 | 897,793 | 699,782 | 198,011 | 67,324 | 53,452 | 37,841 | 4,643 | 3,037 | 31,714 |
| 특별회계 | 92,872 | 72,527 | 20,345 | 6,619 | 2,357 | 2,908 | 51 | | 8,410 |

5. 일반회계 세입결산(결산서 p44)

(단위 : 백만원)

| 과 목 \ 구 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 (A) | 실제수납액 (B) | 정리보류액 | 미수납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계 | 892,990 | 902,891 | 897,793 | 674 | 4,424 |
| 지방세수입 | 39,569 | 42,050 | 39,970 | 576 | 1,504 |
| 세외수입 | 24,162 | 31,370 | 28,425 | 98 | 2,847 |
| 지방교부세 | 308,243 | 308,660 | 308,660 | - | - |
| 조정교부금등 | 33,352 | 33,552 | 33,552 | - | - |
| 보조금 | 231,657 | 234,132 | 234,132 | - | - |
|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| 256,007 | 253,127 | 253,054 | - | 73 |

6. 일반회계 세출결산(결산서 p84)

○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지출액 (B) | 이월액 (C) | 보조금 반납액 | 집행잔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계 | 892,990 | 699,782 | 159,094 | 4,643 | 29,471 |
| 의회운영위원회 | 1,137 | 953 | - | - | 184 |
| 총무위원회 | 387,785 | 323,447 | 51,568 | 2,640 | 10,130 |
| 산업건설위원회 | 504,068 | 375,382 | 107,526 | 2,003 | 19,157 |

○ 부서별 내역(p.95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| 분 | 예산현액 | 지출액 | 이월액 | 보조금 반납액 | 집행잔액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합 | 계 | 388,922 | 324,400 | 51,568 | 2,640 | 10,314 |
| 의 | 회 사 무 과 | 1,137 | 953 | - | - | 184 |
| 총 무 위원회 | 소 계 | 387,785 | 323,447 | 51,568 | 2,640 | 10,130 |
| | 기획예산담당관 | 4,187 | 3,819 | - | - | 368 |
| | 전략담당관 | 31,701 | 15,065 | 16,247 | - | 389 |
| | 행정과 | 72,581 | 69,299 | 301 | 6 | 2,975 |
| | 인구교육과 | 22,587 | 16,618 | 4,585 | 64 | 1,320 |
| | 민원소통과 | 1,781 | 1,474 | - | - | 307 |
| | 재무과 | 11,405 | 8,117 | 3,078 | - | 210 |
| | 경제기업과 | 42,211 | 26,351 | 14,853 | 20 | 987 |
| | 문화관광과 | 19,013 | 16,504 | 1,661 | 188 | 660 |
| | 복지정책과 | 22,058 | 20,878 | 25 | 670 | 485 |
| | 행복나눔과 | 131,977 | 118,588 | 10,749 | 1,460 | 1,180 |
| | 보건소 | | | | | |
| | 보건정책과 | 10,513 | 9,648 | - | 205 | 660 |
| | 건강증진과 | 4,090 | 3,913 | 69 | 27 | 81 |
| | 읍 | 면 | 13,681 | 13,173 | - | - |

7.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

○ 세 입(결산서 p225,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)

(단위 : 백만원)

| 과 목 \ 구 분 | 예산현액 | 징 수 결정액 (A) | 실 제 수납액 (B) | 불 납 결손액(C) | 미수납액 (D=A-B-C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 | 90,788 | 93,504 | 92,872 | 0 | 632 |
| 공 기 업 | 62,236 | 63,331 | 63,075 | 0 | 256 |
| 의 료 급 여 기 금 | 1,050 | 1,056 | 1,056 | 0 | 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30 | 30 | 30 | 0 | 0 |
| 주 차 장 관 리 | 613 | 1,102 | 786 | 0 | 316 |
|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| 11,050 | 11,388 | 11,328 | 0 | 60 |
| 수 질 개 선 | 9,789 | 9,787 | 9,787 | 0 | 0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 | 1,722 | 1,726 | 1,726 | 0 | 0 |
| 농 업 발 전 자 금 | 4,298 | 5,084 | 5,084 | 0 | 0 |

○ 세 출(결산서 p225,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지출액(B) | 이월액(C) | 보조금 반납액(D) | 집행잔액 (F=A-B-C-D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90,788 | 72,527 | 11,884 | 51 | 6,326 |
| 공 기 업 | 62,236 | 48,654 | 8,884 | - | 4,698 |
| 의 료 급 여 기 금 | 1,050 | 1,030 | 0 | 5 | 15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30 | 30 | 0 | 0 | 0 |
| 주 차 장 관 리 | 613 | 333 | 0 | 0 | 280 |
|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| 11,050 | 9,009 | 2,000 | 0 | 41 |
| 수 질 개 선 | 9,789 | 9,728 | | 46 | 15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 | 1,722 | 710 | 1,000 | 0 | 12 |
| 농 업 발 전 자 금 | 4,298 | 3,033 | 0 | 0 | 1,265 |

8.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사용 현황(결산서 p303)

이 용 : 해당사항 없음(결산서 p306)

전 용(일반회계) - 결산서 p307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전 용 금 액 | | 비 고 |
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| | 감 액 | 증 액 | |
| 8건 | 981 | 76 | 76 | |

이 체

- 일반회계(결산서 p308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이 체 금 액 | | 비 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감 액 | 증 액 | |
| 200건 | 65,243 | 65,243 | 65,243 | |

- 주차장관리 특별회계(결산서 p324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이 체 금 액 | | 비 고 |
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| | 감 액 | 증 액 | |
| 11건 | 479 | 479 | 479 | |

-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(결산서 p325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이 체 금 액 | | 비 고 |
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감 액 | 증 액 | |
| 7건 | 11,192 | 11,192 | 11,192 | |

검 토 의 견

□ 전 용(일반회계)

- 예산 전용은 총 8건이며 예산액 981백만원 중 76백만원을 전용하였음
-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,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에 인건비, 시설비 및 부대비,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예산 전용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,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함에 그쳐야 하고,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,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.

- 8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,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
-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.

□ 이 체

- 예산 이체는 218건, 76,914백만원이며, 그 중 일반회계가 200건에 65,243백만원,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1건에 479백만원, 산업담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1,192백만원임
- 이체 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또는 업무 이동임

9. 계속비 결산(3권-결산서 부속서류 p126)

(단위 : 백만원)

| 세부사업명 | 당 해 연 도 집 행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예산현액 | 지출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집행 잔액 |
| 합계(18건) | 69,942 | 29,268 | 40,524 | 150 |
|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| 2,622 | 2,341 | 206 | 75 |
| 노인요양시설확충(신축)사업 | 14,679 | 5,588 | 9,091 | 0 |
| 화관광자원개발-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(전환)(전환사업) | 3,590 | 602 | 2,988 | 0 |
|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(전환) | 3,361 | 885 | 2,476 | 0 |
| 백두대간 거창자연휴양림 조성사업(전환사업) | 368 | 367 | 0 | 1 |
|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| 2,608 | 126 | 2,474 | 8 |
| 산림레포츠파크 지역특화형 숲속의집 조성사업(기초계정) | 1,200 | 1,192 | 0 | 8 |
| 기초생활인프라(소규모 용수개발) (전환) | 1,596 | 83 | 1,513 | 0 |
|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(전환) | 9,401 | 115 | 9,286 | 0 |
|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| 1,748 | 343 | 1,347 | 58 |
| 신활력플러스사업 | 5,455 | 2,140 | 3,315 | 0 |
| 농촌중심지활성화(일반지구) | 2,460 | 1,360 | 1,100 | 0 |
| 기초생활거점육성(가북면) | 4,219 | 743 | 3,476 | 0 |
| 기초생활거점조성(농촌협약-마리면) | 285 | 85 | 200 | 0 |
|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| 6,250 | 5,684 | 566 | 0 |
|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농촌협약-거창읍) | 603 | 112 | 491 | 0 |
| 기초생활거점조성(농촌협약-주상면) | 285 | 82 | 203 | 0 |
|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| 9,212 | 7,420 | 1,792 | 0 |

검 토 의 견

-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18건에 29,268백만원이며, 일반회계는 17건에 21,848백만원,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7,420백만원임.
- 지방재정법 제42조(계속비 등)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,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8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.

10. 예비비 지출(결산서 p330)

(단위 : 백만원)

| 과 목 | | | 지 출 결정액 | 지출액 | 이월액 | 집행잔액 |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조 직 | 단 위 | 세부사업 | | | | | |
| 합 계 | | | 21건 | 6,218 | 4,221 | 912 | 1,085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3 | 3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12 | 12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197 | 197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1,168 | 1,168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10 | 10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370 | 370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93 | 93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22 | 22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40 | 40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108 | 108 | 0 | 0 | |
| 보건정책과 | 공공의약 관리 | 공립요양병원운영 | 90 | 90 | 0 | 0 | |
| 안전총괄과 | 재해대비 | 소규모 재해해소 | 133 | 133 | 0 | 0 | |
| 산림과 | 산림생태 보호 | 7.9.~7.19. 호우피해 재난복구 | 1,294 | 64 | 596 | 634 | |
| 건설교통과 | 소규모 지역개발 | 호우피해 재난복구 | 937 | 879 | 34 | 24 | |
| 건설교통과 | 하천 정비 | 하천 유지보수사업 | 393 | 0 | 282 | 111 | |
| 농업축산과 | 농촌복지인프라구축 |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| 195 | 189 | 0 | 6 | |
| 농업기술과 | 고식미 생산 |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| 330 | 165 | 0 | 165 | |
| 농업기술과 | 고식미 생산 |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(도비) | 597 | 593 | 0 | 4 | |
| 농업기술과 | 고식미 생산 |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 복구지원(도비) | 34 | 33 | 0 | 1 | |
| 농업기술과 | 고식미 생산 | 6월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| 29 | 27 | 0 | 2 | |
| 농업기술과 | 농산물마케팅고도화 | 공동선별공동계산 지원 | 163 | 25 | 0 | 138 | |

검 토 의 견

-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21건에 6,218백만원이며, 그 중 4,221백만원을 지출하고 91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, 집행잔액은 1,085백만원임.
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보건정책과의 공립요양병원운영은 군 직영에 따른 지출이며 산림과, 건설교통과, 농업축산과, 농업기술과 소관 지출은 호우 피해와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검토됨.

11. 다음연도 이월사업(결산서 부속서류 p153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건 수 | 예산현액 | 이월액 | 비 고 |
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계 | 306 | 596,090 | 170,978 | |
| 명 시 이 월 | 106 | 231,704 | 73,943 | 일반회계 94건 담주변지역특 1건 상수도특 7건 하수도특 4건 |
| 사 고 이 월 | 164 | 281,097 | 55,808 | 일반회계 154건 산업단지 1건 상수도특 6건 하수도특 3건 |
| 계속비 이월 | 36 | 83,289 | 41,227 | 일반회계 32건 산업단지 1건 하수도특 3건 |

※ 지난해 이월사업 : 355건, 167,273백만원

검 토 의 견

-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,
-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, 보상지연, 설계변경, 행정절차 지연,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.
-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,
- 계속비 지원사업,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,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IV 기금결산(결산서 p352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기 금 명 | 전년도말 조성액 ㉑ | 당 해 연 도 증 감 액 | | | 당해연도말 조성액 (㉒=㉑+㉓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계(㉒=㉑+㉓) | 조 성 액(㉔) | 사 용 액(㉕) | |
| 계(9종) | 148,624 | △54,091 | 4,173 | 58,264 | 94,533 |
| 식 품 진 흥 기 금 | 134 | △1 | 50 | 51 | 133 |
| 중소기업육성기금 | 5,676 | △539 | 100 | 639 | 5,137 |
| 사 회 복 지 기 금 | 2,465 | 59 | 91 | 32 | 2,523 |
| 재 난 관 리 기 금 | 3,400 | 84 | 796 | 712 | 3,484 |
| 아림예술제진흥기금 | 502 | 11 | 15 | 4 | 513 |
| 옥외광고발전기금 | 578 | △242 | 66 | 309 | 336 |
| 체 육 진 흥 기 금 | 1,103 | 0 | 17 | 17 | 1,103 |
| 통합재정안정화기금 | 134,766 | △53,930 | 2,570 | 56,500 | 80,836 |
| 고 향 사 랑 기 금 | 0 | 468 | 468 | 0 | 468 |

검 토 의 견

- 2023년 고향사랑기금이 신규로 조성되었으며, 2023년도 현재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48,624백만원, 당해연도 조성액은 4,173백만원, 당해연도 사용액은 58,264백만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,533백만원임.
-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.

-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%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.
-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감소액이 539억원인데 신규 대형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정 충당으로 보여짐.
-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, 아름예술제진흥기금,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.

V

채권액결산(결산서 P.556)

○ 회계별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전년도말 현재액 | 당 해 연 도 발 생 액 | 당 해 연 도 소 멸 액 | 당해연도말 잔 액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 계 | 4,260 | 3,078 | 2,639 | 4,699 |
| 일반회계 | 2,728 | 78 | 304 | 2,502 |
| 특별회계 | 1,522 | 3,000 | 2,325 | 2,197 |
| 농업발전기금 | 1,522 | 3,000 | 2,325 | 2,197 |
| 기 금 | 10 | 0 | 10 | 0 |
| 사회복지기금 | 10 | 0 | 10 | 0 |

※ 채권액은 원금 + 이자 기준임.

검 토 의 견

-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,260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,078백만원이 발생하고, 2,640백만원이 소멸하여 439백만원이 증가한 2023년도말 현재액은 4,699백만원임.
-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0백만원, 보증금채권 133백만원, 융자금 채권 4,532백만원, 기타채권이 34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이고,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, 주택 융자이며, 기타채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.

VI 채무액결산(결산서 p377)

- 거창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0원임.
- 2018년도 이후로 채무가 0원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.

VII 보조금결산(본예산)(결산서 부속서류 p387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예산액 | 수령액 | 집행액 | 이월액 | 집행잔액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합계 | 385,849 | 388,320 | 306,421 | 67,270 | 14,629 | |
| 일반회계 | 376,466 | 378,937 | 297,071 | 67,270 | 14,596 | |
| 특별회계 |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| 30 | 30 | 30 | 0 | 0 |
| | 의료급여기금 | 170 | 170 | 166 | 0 | 4 |
| | 수질개선 | 9,183 | 9,183 | 9,154 | 0 | 29 |

※ ()내서는 군비 부담액임.

검 토 의 견

- 202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88,320백만원으로 예산액 385,849백만원이고, 집행액은 306,421백만원, 이월액 67,270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,629백만원임.
-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군비부담액은 144,80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37.3%에 해당됨.

VIII

기타 검토의견

-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.
-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,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.
-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, 합리성,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, 감독,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.
-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,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,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,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,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,
-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,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,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.
- 2023년도 총 세입액은 1,143,462백만원, 총 세출액은 830,57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312,889백만원임. 세입대비 27.3%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.

- 총 세입은 1,143,4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백만원이 감소하였 으며,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08,659백만원(34.3%)이고, 보조금 234,132백만원(26.0%), 조정교부금 33,553백만원(3.73%), 지방세는 39,970백만원(4.5%), 세외수입은 28,425백만원(3.2%)으로
-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(7.6%)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(64.2%)의 비율이 8배 가량 높음.
- 세출은 830,5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,095백만원이 증가하였 으며,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157,919백만원, 사회복지 147,475백만원, 국도 및 지역개발 70,645백만원 순이며,
-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교육(47%), 문화관광 (34%)분야이며,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32% 감소하였음.
-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,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.
- 또한,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, 2023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4,533백만원이며, 당해연도 조성액은 4,173백만원임.

-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%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.
- 당해년도 조성액은 4,173백만원이고, 사용액은 58,264백만원으로 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54,091백만원이 더 많으며,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임.
-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·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,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,
-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-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체 1,270건 675백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, 평가액 부족,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 보류하였으나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 이유가 대부분으로 대체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,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.
-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.2%로 매우 양호하며 특히,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그 비율이 95.1%로 수납 비율이 양호하나,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비교해 볼 때 순 수납액 비율이 90.6%로 상대적으로 낮음.

- 특히,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은 징수율이 74.6%로 매우 저조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함.
- 2023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,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-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등 29건 415백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.
- 거창군에서 수립한 성과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목표 24개, 정책사업목표 79개 추진을 위한 217개의 정책(성과)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지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
-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거나,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.
-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·특수·역점·현안사업은 반드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,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9개 예산사업 중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 플랜 수립 등 9개 사업은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음.

★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

| 연번 | 부서명 | 사업유형 | 사업명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| 인구교육과 | 현안·역점 | 미래교육도시 거창마스터 플랜 수립 | |
| 2 | 경제기업과 | 신규·특수 | 거창군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| |
| 3 | 경제기업과 | 현안·역점 |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| |
| 4 | 문화관광과 | 현안·역점 | 가북면 용산숲~우혜마을 트레킹길 조성사업 | |
| 5 | 복지정책과 | 현안·역점 | 에코워싱(ECO WASHING) 일회용품 이젠 그만! | |
| 6 | 안전총괄과 | 신규·특수 |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| |
| 7 | 산림과 | 신규·특수 | 가로수 테마전정 시범사업 | |
| 8 | 행복농촌과 | 신규·특수 | 건강한 청소년 식생활 문화 조성 | |
| 9 | 거창사건사업소 | 현안·역점 | 방방곡곡 거창사건 역사공감 홍보 | |

-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,
-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성과계획서를 변경할 경우,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변경하는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.
-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217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25개, 초과 달성이 24개 확인되었음
-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정성,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,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,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기 바람.